

의안번호	1601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출연월일	2017. 9. 27.

목 차

【일반회계】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4
○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5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의자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 소관 취득재산 목록	8
○ 보건소 청사 이전 증축 계획(안)	9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의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취득재산 목록	23
○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계획 변경안	24

【참고자료】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서 사본	33
□ 관 련 법 령	36

일반회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중요재산 취득)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 청사 이전 증축 계획안 [노인보건장애인과]
 - 現 보건소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협소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구 교육청 부지로 이전하여 증축하고자 함.
-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추가 매입 계획안 [농업기술센터]
 - 제44회 시의회 임시회(17.9.12)에 당초 계획을 축소하여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의결 받았으나,
 - 이후, 센터 인근(100여미터)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도의사가 접수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 매입하고자 함.

[취득재산]

- ▶ 토지 : 3필지 3,543㎡ 매입
- ▶ 기타 : 3건(건물 증축, 주차장 조성 및 기반조성 공사비 등)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총괄표 : 붙임

4.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붙임

5. 참고사항 : 소관별 공유재산 심의자료 및 결과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7년도 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17본예산+1차 수시분+ 2차 수시분)			변 경			증 감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계	토지	98	100,802	35,692,194	101	104,345	37,805,194	3	3,543	2,113,000	
		건물	20	2,533.45	879,815	20	2,533.45	879,815				
		기타	7	35,459	85,353,946	10	41,608	96,400,946	3	6,149	11,047,000	
	1. 매 입	토지	98	100,802	35,692,194	101	104,345	37,805,194	3	3,543	2,113,000	보건소 등
		건물	20	2,533.45	879,815	20	2,533.45	879,815	-	-	-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5 2	28,175 7,284	83,393,946 1,960,000	6 4	30,187 11,421	88,413,946 7,987,000	1 2	2,012 4,137	5,020,000 6,027,000	보건소 증축 개보수 등
	계	토지										
		건물										
기타												
계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계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계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계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 표시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대장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수량 (면적)				
합계	토지	3건		3,543	2,113,000			
	건물	-		-	-			
	기타	3건		6,149	11,047,000			기반공사
소계	토지	3건		3,543	2,113,000			
1	토지	조치원읍 신흥리 53-1	대	1,213	1,300,000	2017년	보건소 이전 증축 부지	매입
2	토지	조치원읍 신흥리 53-3	대	450	500,000	2017년	보건소 이전 증축 부지	매입
2	토지	연서면 쌍전리 567-1	답	1,880	313,000	2017년	도농상생 종합 클러스터 구축	매입
소계	기타	3건		6,149	11,047,000			
1	기타	조치원읍 신흥리 63-1	대	2,012	5,020,000	'18~'19년	보건소 증축	증축
2	기타	조치원읍 신흥리 63-1 등	대	2,257	5,977,000	'18~'19년	본관 개보수, 주차시설 등	공사비 등
3	기타	도농상생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사비 등	답	1,880	50,000	'17~'18년	도농상생 종합 클러스터 구축	기반공사

※ 기타 : 개보수 등 공사비, 주차시설 조성비, 기반조성 공사비, 설계비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행정복지국 소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 표시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대장가격)	요구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수량 (면적)					
합계	토지	2건		1,663	1,800,000	1,800,000			
	기타	2건		4,269	10,997,000	10,997,000			
소계	토지	2건		1,663	1,800,000	1,800,000			
1	토지	조치원읍 신흥리 53-1	대	1,213	1,300,000	1,300,000	2017년	보건소 이전 증축 부지	매입
2	토지	조치원읍 신흥리 53-3	대	450	500,000	500,000	2017년	〃	〃
소계	기타	2건		4,269	10,997,000	10,997,000			
1	기타	조치원읍 신흥리 63-1	대	2,012	5,020,000	5,020,000	'18~'19년	보건소 증축	증축
2	기타	조치원읍 신흥리 63-1 등	대	2,257	5,977,000	5,977,000	'18~'19년	본관 개보수, 주차시설 등	공사비 등

※ 참고사항

- 취득재산 목록 중 '기타' : 보건소 증축, 본관 개보수, 주차시설(70면), 설계비 등

보건소 청사 이전 증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기관 인프라 지속 개선
-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 사전예방기능 중심의 보건기관 기능 보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접근성 결여 및 협소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제공에 한계
- 위탁시설과 각종센터의 보건소 내 설치를 위한 청사 확보 시급
- 접근성이 용이한 중심지로 보건기관 이전이 절실히 요구
- 인구 급증에 따른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 기능 수행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지속 개선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제24조
- 사업기간 : 2017 ~ 2020년
- 위 치 : 조치원읍 대침로 32(구 교육청 청사)
- 사업규모 : 부지 6,000m² / 연면적 4,269m²
- 사 업 비 : 16,000백만원(시비 13,300, 국비 2,700)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	2018	2019	2020이후
계	16,000	0	5,000	5,400	5,600	-
국 비	2,700	0	0	1,400	1,300	-
자체재원	13,300	-	5,000*	4,000	4,300	-

* 교육청부지 등 공유재산(부지+건물) 유상 이관비용 32억 + 국유재산(부지) 감정평가액 18억 추정

4.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금액	
총계		15,997	
공사비	소계	9,722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 : 연면적(2,012㎡)×2,495천원=5,019,940,000원 • 개보수 : 연면적(2,257㎡)×2,495천원*40%=2,252,486,000원 • 주차시설 : 70면*35,000,000원 = 2,450,000,000원 * '15년 조달가 산출 2,283천원 / 물가인상 3% 적용 '18년(9.3%)(2,495천원/㎡) 	9,722
보상비	소계	5,000	
	부지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 3,176,966,000원 - 부지 : 2,000,434,000원, 건물 : 1,176,532,000원 • 국유재산 : 1,800,000,000원(감정평가로 결정) 	5,000
용역비	소계	1,223	
	계	569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비(8,750,183,400원)×설계비요율(5.147%)×1.1(VAT)=495,409,133원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비 요율 적용 [2종(보통)-상급] 	495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설계대가 1식 = 69,481,130원 기본및실시설계비(459,409,133원)*적용요율(12.75%)×1.1(VAT)=69,481,130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요율 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13조 / 녹색건축인증기준 제7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6조) 	69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공제료 1식 = 1,603,143원 ※ 가입금액(69,481,131원)*적용요율(0.692%)*1.1(VAT)=528,890원 	5
건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비 1식 = 654,513,718원 ※ 건축공사비 8,750,183,400원× 전면책임감리비 요율6.8%×1.1(VAT)=654,513,718원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감리비 요율 적용 	654	
기타	소계	52	
	시설부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비(8,750,183,400원)×적용요율(0.24%)×1.1(VAT)=23,100,484원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23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비(8,750,183,400원)×적용요율(0.3%)×1.1(VAT)=28,875,605원 ※ 조달청 계약 수수료, 각종 심의·평가 용역비 등 공사비의 0.3% 적용 	29

5. 그동안 추진현황

- ('17. 7월) 보건소 청사 이전(부지 확보) 기본계획 수립
- ('17. 7월)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개선 국비신청 응모
- ('17. 8월) 공유재산(구 교육청사 부지) 권리청 변경(교육감→시장)
- ('17. 8월) 보건소 청사 이전 중앙투자심사서 제출(행정안전부)
- ('17. 9월)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6 향후 추진계획

- ('17. 10월) 공유재산 취득 의회 동의안 제출
- ('17. 12월) 국·공유 재산 유상이관(매입) 완료
- ('18. 1월) 보건소 청사 이전 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 ('18. 11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착공
- ('19. 12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완공

7.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지역주민의 지역건강수준 향상과 취약성 개선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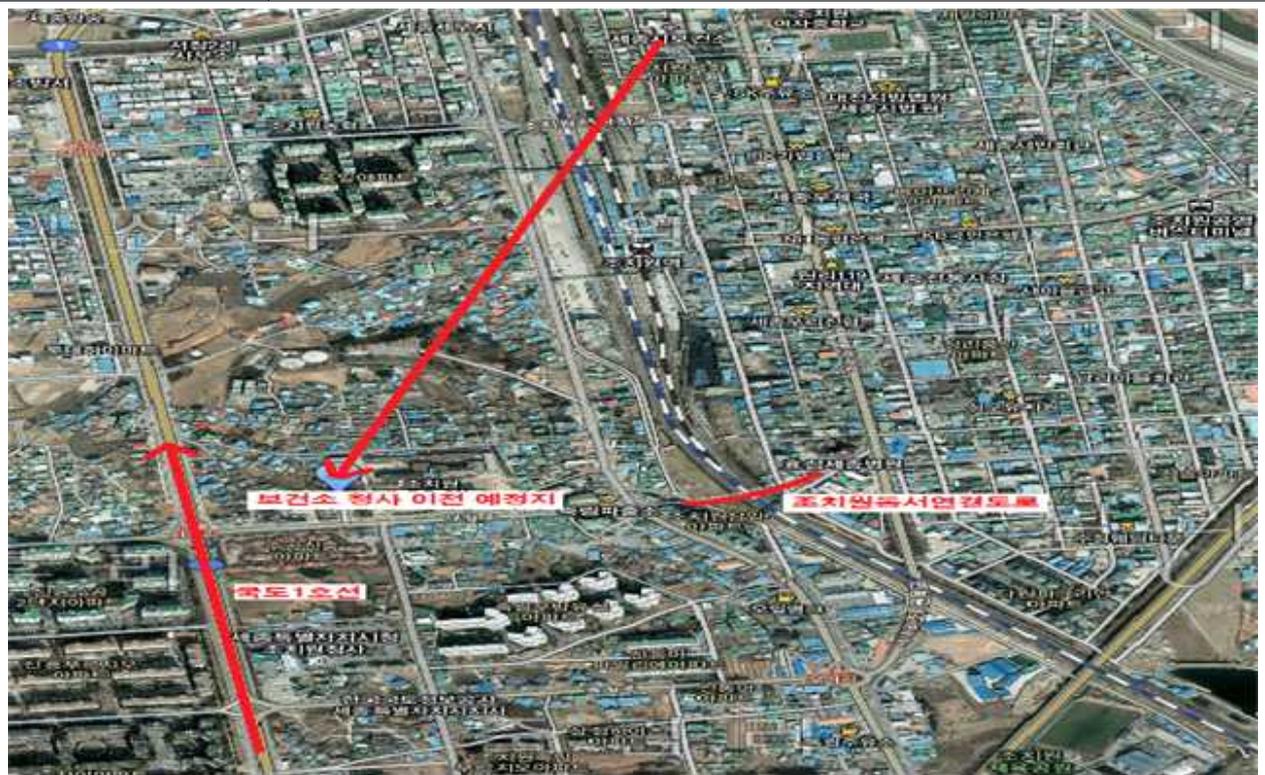
8.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보건소 청사이전 기본 계획」 방침문서

참고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참고 2

방침문서

등록번호	노인보건장애인 과-18650	주무관	보건 의료 정책 담당	노인보건 장애인과 장	행정 복지국 장	정 무부 시장	행정 무시 장	시장
등록일자	2017. 07. 22.							2017. 7. 22.
결재일자	2017. 07. 22.	김수영	정영옥	이윤호	강성기	강준현	한경호	이춘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보건소장 청사관리담당 예산담당 재정평가담당 공공건축추진단 담당 교육지원담당 보건행정과장	이강산 유병학 조규태 이재만 진익호 방병홍 김정섭	기혁 조성실장 균형발전국장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행정 도시지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동혁 조수창 배준석 류제일 노동영 김성수 김덕중		

보건소 청사 이전 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보건소 청사 이전 기본계획

- ◇ 우리시 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 추진
⇒ 구 교육청 청사 개보수 및 필요 면적 증축 이전

1 추진배경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인구수 11만명('13년) → 26만('17년)으로 4년간 15만명 증가
 -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 실시
 -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접근성이 가장 취약
 -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기능 강화 요구
 - 보건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 교육청 부지로 이전 검토
 - 1번국도 및 동·서도로 연결 등 접근성이 가장 좋음
- ⇒ 보건의료 접근성과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이전

2 그간 추진상황

-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 실시('16. 7. ~ '17. 1.)
- 보건소 이전 부지(1번국도 인근 교통 편리한 장소) 조사('17. 1.)
- 구 교육청사 부지(건물) 재산이관 실무협의(2회)
- 재산이관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원안가결('17. 5.)
- 보건소 이전 방안 정책조정회의 협의 ('17. 7. 14.)
⇒ 교육청 청사 개보수 활용 및 진료 공간 등 증축 이전

□ 부지규모

- (위 치) 조치원읍 대철로 32(구 교육청 부지)
- (부 지) 6,000㎡(교육청 4,337㎡+교육부 1,663㎡ 이상)
- (비 용) 약 32억원*+α(시비)

* 재산 이관 등: 부지 5필지 6,409㎡ 20억원(교육청 4,337, 교육부 2,072) / 건물 2756㎡ 12억원
 ※ 교육청 부지(건물) 유상이관(대장가액), 교육부 부지 53-13 2필지 감정평가액 적용

□ 청사 증·개축 계획

○ (규 모) 연면적 4,269㎡, 주차시설 70면

- 증축 2,012㎡*, 구 교육청 청사 개보수 2,257㎡

* 증축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보건소 본관 건물대비 과도한 증축은 지원불가 입장, 증축 면적 최대한 국비 확보 노력

○ (개략 사업비) 약 142억원(공사비 110억, 부지비 32억)

구분	산출기초	금액(억원)
계		142(국비 27.5, 시비 114.5)
공사비	본관 증축비	2,012㎡ x 2,495천원
	본관 개보수	2,257㎡ x 2,495천원 x 40%
	주차시설	70면 x 35,000천원
	설계비·감리비 등	총 공사비 98억원의 5%(설계비), 7%(감리비), 기타비용
부지비	재산이관 등 비용	구 교육청사 부지·건물
		32(시비)H H

○ (국비지원) 27.5억(증축 단가 1,870천원/㎡, 개보수 단가 370천원/㎡의 2/3)

- 증축 2,012㎡, 개보수 2,257㎡(1,035㎡만 국비지원)

- 교육부 부지 2필지 측량 면적 확정 후 감정평가액 매입*(17.12월말)
- * 교육부 53-3 분할 측량 및 53-1 경계측량(시청) → 용도폐지 및 자산관리공사 이관(교육청) → 감정평가 및 매각(자산관리공사) → 부지매입(시청)

【국·공유재산 이관 등 대상 현황】

구분	지번	면적 (㎡)	디장가액 (천원)	총금액 (천원)	관리청
부지	소계	4,337		2,000,434	세종시 교육감
	신흥리 63- 1	3,620	467,200	1,691,264	
	신흥리 60-11	456	431,200	196,627	
	신흥리 60- 7	261	431,200	112,543	
건물	소계	2,756.41		1,176,532	
	신흥리 53- 1외	37.5	213,175	213,175	
	신흥리 53- 1외	2,257.76	804,180	804,180	
	신흥리 53- 1외	339.2	137,714	137,714	
	신흥리 60- 7	121.95	21,463	21,463	
부지	소계	2,072		848,553	
	신흥리 53- 1	1,213	424,500	514,918	
	신흥리 53- 3	859	388,400	333,635	

※ 부지 : '17년 금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완료(17. 5.12) / 5.31자 결정금시 금액 기준임

※ 건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7.1.1기준) 금액 기준임.

《보건소 청사 현황》

- (위 치) 조치원읍 건강로 16
- (부 지) 5,391㎡
- (연면적) 2,709㎡ / 건축면적 1,555.4㎡(지상2층) / 2009년 신축
- (건 물) 3개동(본관 제1동), 제2동, 제3동 / 총 연면적 2,797㎡

○ (장 점) 기존 건물 활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 도시재생에 의한 청춘조치원 사업 동력 추가, 시립의원 협약 만료 등에 따른 위탁 센터 등 이전 공간 확보,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접근성 강화

○ (단 점) 일부 공간 수평 증축*에 따른 부지 활용도 저하 및 기존 공간에 주차시설 별도 확보 필요

* 건축사 자문결과 기존 건물 재이용 시 안전성능 및 경제성 확보 어려워 수직 증축 곤란

○ 신규 사업 필요시설

실명	실수	면적계(㎡)	비고
계	29	1,560	
재활, 고당센터, 기타 확장설치	3	379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설치	9	328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 이전설치	14	653	
도달헬스케어센터 신규설치	3	200	

○ (국비확보) 능어촌 보건소 등 이전 공모 신청

- 공모신청 7월 / 심사 10월 / 최종 결정 12월

* 국비 지원 기준 : 신·증축 ㎡당 1,870천원, 계보수㎡당 370천원의 29(5%)

【개략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사업비	32+a*	50	60	
내역	모상비 등	설계비 등	공사·감리 등	

* 국가(교육부)소유 부지 감정평가액

□ 재산이관 계획

○ 교육청 부지 및 건물 유상 이관, 교육부 부지 매입

- 교육청 부지 3필지(건물 4개동)* 유상재산 이관 협의 완료(17. 8월말까지)

* 부지 4,337㎡, 건물 4개동 연면적 2,756.41㎡ / 재산가액 3,176,966천원

4 향후 추진계획

일 정	주 요 업 무
'17.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이전 기본계획 수립 ▪ 국·공유재산 유상이관 등 계획 수립 ▪ 보건소 이전 국비 신청 ▪ 보건소 이전 재정영향평가 실시
'17.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교육청 부지(건물) 이관 협의 완료 ▪ 보건소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보건소 청사 이전(중축) 중앙투자심사
'1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이전 공유재산 의회 승인 ▪ 이전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교육청 부지 등 유상이관 예산 추경반영
'17.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관으로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
'1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이전 공유재산 유상이관 완료 ▪ 보건소 이전 국유재산 매입추진 완료
'18.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공모 추진(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이행)
'18.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실시 설계 추진
'18.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공사 추진(입찰공고, 계약, 착공)
'19.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및 보건소 이전

붙임1

보건소 이전부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붙임2

타 보건소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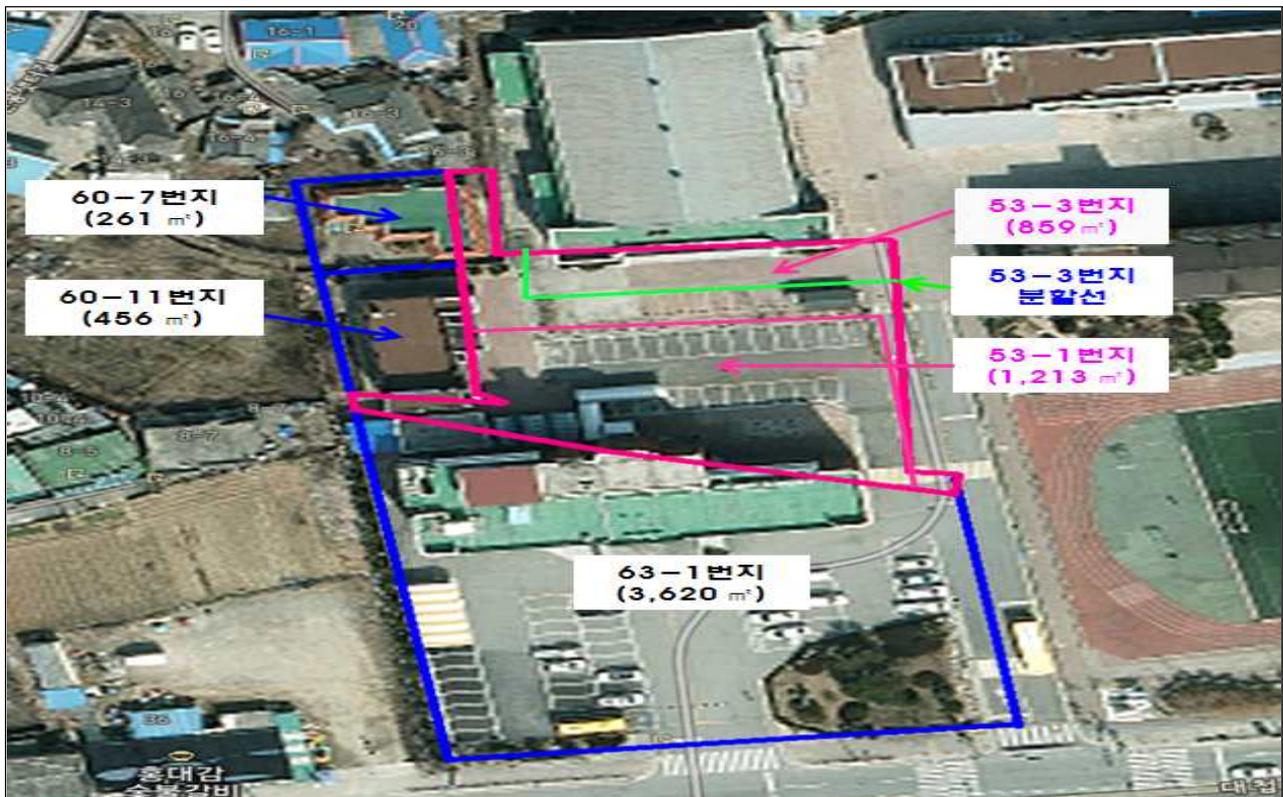
보건소 명	연면적(m ²)	건축연도	'17.4말 인구수(명)	주차대수	비고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6,540	2005	236,893	50면*	지하1층 지상3층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18,644	2016	236,036	210면	지하4층 지상7층
충남 서산시보건소	4,630	2016	175,038	76면	지하1층 지상3층
충남 공주시보건소	5,664	2017	93,199	93면	지하1층 지상2층
대전시 유성구보건소	6,040	2019.예정	343,939	150면	지하1층 지상3층

* 행정타운 내 공동사용

※ 공통 사항 : 주차면 최대 확보 필요

붙임3

교육부 소유 부지 분할 요청 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 표시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대장가격)	요구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수량 (면적)					
합계	토지	3건		7,564	1,183,000	1,183,000			
	기타	2건		7,564	650,000	650,000			
소계	토지	3건		7,564	1,183,000	1,183,000			
1	토지	연서면 쌍전리 567	답	2,844	435,480	435,480	2017년	도농상생 종합 클러스터 구축	매입
2	토지	연서면 쌍전리 567-1	답	2,840	434,520	434,520	2017년	〃	매입
3	토지	연서면 쌍전리 670	답	1,880	313,000	313,000	2017년	〃	추가 매입
소계	기타	2건		7,564	650,000	650,000			
1	기타	도농상생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사비 등		5,684	600,000	600,000	'17~'18년	도농상생 종합 클러스터 구축	공사비 등
2	기타	도농상생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사비 등		1,880	50,000	50,000	'17~'18년	〃	추가 소요

※ 참고사항

- 취득재산 목록 중 '기타' : 기반조성 공사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추가매입 계획안

1. 제안이유

- 시정역점과제와 연계한 종합클러스터 구축으로 융복합 지원체계 확립
- 농업인, 도시민, 소외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체험형 어울공간 조성
- 세종농업을 선도하는 시험·연구개발 기능 지원체계 구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이전 설치
- 병해충 예찰답 이전, 실증시험 연구시설, 도·농 상생 학습원 조성
- 식물유전자원, 도시텃밭 등 도시민 농업 체험공간 조성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농기계실습교육장, 미생물생산시설, 시험연구시설, 도농상생학습원 등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7조, 제19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 사업기간 : 2016 ~ 2018년
- 위 치 : 연서면 쌍전리 567, 567-1, **670번지**
 - ※ 관리계획 기의결 : 연서면 쌍전리 567, 567-1(5,684㎡),
- 사업규모 : 7,564㎡ **※ 추가 : 1,880㎡**
- 사 업 비 : 1,833백만원(시비 1,833백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구분	계	토지매입	설계	건축공사	비고
계	1,833	1,183	20	630	(단위 : 백만원)
2017	1,183	1,183			
2018	650		20	630	국비 확보예정

- 사업비 확보 현황 : 시비 3,000백만원

4.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1,833
부지 매입 비	소계		1,183
	부지매입	5,684.8m ² (1m ² × 153,000원) 1,880.2m ² (1m ² × 166,000원)	870 313
설 계 비	소계		20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기반조성 실시설계 1식	20
건 축 공 사 비	소계		630
	순 공사비	기반조성, 농기계실습교육장 조성 등	630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5. 그동안 추진현황

- ('16. 03. 28.) 기본계획 방침결정
- ('16. 4~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원간담회 보고
- ('16. 12월) 인접지 매입 추진 보고(무리한 호가 요구로 부결)
- ('17. 4월) 매입가능 대상지(쌍전리 567 외) 매도의향서 접수
- ('17. 9. 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5,684.8m²)
- ('17. 9월) 추가매입 가능 대상지(쌍전리 670) 협의
- ('17. 9월) 추가매입에 따른 변경안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6 향후 추진계획

- ('17. 10월) 공유재산취득 변경 의회 동의안 상정
- ('17. 11월) 부지매입 추진 및 보상금 지급
- ('18. 1월) 토지 기반조성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
- ('18. 10월) 주요 부대시설 설치 완료 및 활용

7.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 (장애요인)
토지주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무리한 호가 요구
- (대응방안)
부지 활용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여 인근 농업 종합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파급효과에 대한 피력으로 토지주 설득

8. 기대효과

- 도·농 상생 시설 구축으로 세종형 지속가능 농업 기반 마련
- 세종농업을 선도하는 실습교육, 시험,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 도시와 농촌을 함께 아우르고 소통하는 공공형 지원중심 기능 수행

9.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도·농상생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계획」 방침문서

참고자료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참고자료 2

방침문서

등록번호	지도기획과-8068	지원기획 담당	지도기획 과장	농업기술 센터소장	농업정책 보좌관	정무부시 장	행정부시 장	시장
등록일자	2017. 09. 25.							2017. 9. 25.
결재일자	2017. 09. 25.	임재우	출장	신은주	권운식	강준현	류순현	이춘희
공개구분	비공개 (5)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재산관리담당 고기동 류제일 조규태 김민옥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추가매입 추진계획

※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정책조정회의(17.9.22)를 거쳐 다음과 같이 추가매입 하고자 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 클러스터 부지 추가매입 추진계획(안)

<농업기술센터 '17.9.22>

◇ 시정역점과제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관련 추가 적격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 추진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사업비) : 30억원 (시비 / '16년도 제1회추경) 【추진기간 : 2016~2018】
- (당초 매입계획) : 연서면 쌍전리 주변 (답693-1-688번지) 【19,800㎡내외】
- (사업내용) : 농업시험연구시설 실습교육장 도농상생학습원식물유전자원 도시텃밭 등 등

II 그동안 추진상황

- ('16.3.28~5.31) : 방침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회)
- ('17.6.15) 주변 토지주 무리한 호가요구 등으로 매입계획 변경(방침결정)
- 매입 협의 및 공유재산 변경승인 완료
 - 연서면 쌍전리 답567-567-1 (5,684㎡ / 1,722평, 【소요예산 870백만원】
 - ('17.9.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의회)

III 추가 매입 추진계획(안)

- 추가매입 협의중인 토지
 - 연서면 쌍전리 답670번지 (1,880.2㎡ / 569평, 【소요예산 : 313백만원】
(협의단가 : 550,000원/3.3㎡)
- 실무부서 검토 의견 및 활용방안
 - 추가 매입가능한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기준거리 100여m로 접근성 매우 양호하여
 - 집중관리가 필요한 현장실습교육장, 미생물 생산시설 등으로 조성 활용하고
 - 기 매입 확정된 1,722평은 실증시험 연구포장 도농상생 학습원으로 효율적 활용 가능

IV 추진과정 주요 쟁점

- (기본계획 변경) : 당초 계획된 조성면적 축소 및 내용(새기술실증시험포,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가공센터, 주차공간 등) 변경 문제
 - ↳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16년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내에 신축(운영중)
 - ↳ (공공급식 지원센터) 4-2생활권 매입(9,917㎡)결정'18년 예산 반영 /로컬푸드과
 - ↳ (청사 주차공간 부족) 차수방재과 협의를 통해 농업기술센터 앞 하천부지 3,278㎡ 활용 협의완료 (기 하천사용자 점용단료 '17.12.31후 주차장 조성)

V 향후계획

- (2017년) 공유재산 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변경안 상정
 - 확정부지 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 '18년 지특예산 확보 추진
 - '17년 농촌지도기반조성예산(국비 : 6억원) 변경(농진청 협의) 기반조성 활용
- (2018년) 실시계획 수립, 주요 부대시설 등 설치 (사업완료)

참고1 추가매입 가능 예정지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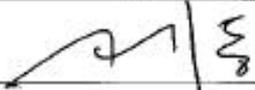


<추가매입 대상지 : 농업기술센터 기준 거리 - 100m>

참 고 자 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서 사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회의일시	2017. 9. 26. (화) 14:00~16:20		
심의안건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 계획(안) 등 11건		
참석대상	11 인 (참석 : 7 인, 불참석 : 4 인)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류 순 현	불 참	
부위원장	고 기 동		
부위원장	김 상 봉	불 참	
위 원	류 제 일	불 참	
위 원	김 정 모	불 참	
위 원	천 성 희	천 성 희	
위 원	정 선 주	정 선 주	
위 원	고 범 석	고 범 석	
위 원	정 채 봉	정 채 봉	
위 원	최 재 경		
위 원	김 승 종	김 승 종	
심의결과	상정 : 11건 결과 : 내역 불임		
작성자	소속 : 예산담당관 직급 : 행정6급 성명 : 이 경 선 		

<심의내용>

안전번호	구분	심 의 안 건	의결내용
2017-24	취득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 계획(안)	원안의결
2017-25	취득	조치원 운동장 조성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의결
2017-26	취득	부강 생활문화센터 및 청소년문화관 조성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의결
2017-27	취득	전의 청소년문화센터 및 홍보관 조성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의결
2017-28	취득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매입 계획(안)	원안의결
2017-29	취득	████████████████████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의결
2017-30	취득	장례문화 교육·홍보관 건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의결
2017-31	취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계획(안)	원안의결
2017-32	취득	문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의결
2017-33	취득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원안의결
2017-34	취득	하수준설슬러지처리장 신축 계획(안)	원안의결

평면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리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